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182 |
|----------|-----|

2023. 1. 19.(목)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안지윤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23년 1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월 18일

-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지윤 의원)

가. 제안사유

- 충북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걷기운동 포인트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걷기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걷기운동이 건강 개선과 기대 수명을 늘리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로,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서도 '걷기 실천율'을 건강지표로 조사·활용하고 있음.
  - 즉,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안전하고 쉽게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걷기의 활성화는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 등 개인의 질병을 예방하여 기대수명을 높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걷기 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sup>1)</sup> 40.3%과 비교해, **충북은 38.4%**로 전국 **광역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걷기 실천율 현황(2012-2021)>

(단위:%)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b>시·군구중앙값</b> | 40.9  | 38.2  | 37.5  | 40.7  | 38.7  | 39.7  | 42.9  | 40.4  | 37.4  | <b>40.3</b>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비고        |
|-----------|-------------|-------------|-------------|-------------|-------------|-------------|-------------|-------------|-------------|-------------|-----------|
| 서울        | 52.1        | 55.9        | 55.5        | 57.5        | 55.8        | 61.5        | 67.0        | 61.0        | 53.1        | 55.5        | 1         |
| 부산        | 46.9        | 42.8        | 43.7        | 45.4        | 44.7        | 49.4        | 55.7        | 49.7        | 40.7        | 46.1        | 2         |
| 대구        | 42.3        | 42.1        | 41.7        | 47.3        | 37.9        | 43.2        | 46.2        | 44.6        | 39.1        | 41.4        | 7         |
| 인천        | 46.7        | 48.9        | 51.2        | 46.6        | 44.9        | 47.3        | 51.9        | 49.9        | 44.8        | 45.6        | 4         |
| 광주        | 41.4        | 38.4        | 34.3        | 44.7        | 40.8        | 47.7        | 47.6        | 43.7        | 34.3        | 43.4        | 5         |
| 대전        | 48.2        | 50.3        | 48.4        | 52.9        | 54.6        | 47.1        | 49.8        | 47.0        | 33.3        | 39.8        | 10        |
| 울산        | 42.7        | 41.9        | 40.7        | 44.4        | 34.7        | 40.1        | 43.5        | 42.7        | 39.6        | 40.9        | 8         |
| 세종        | 44          | 48.8        | 36.5        | 33.5        | 35.6        | 36.1        | 28.8        | 34.5        | 28.8        | 38.5        | 11        |
| 경기        | 44.1        | 42          | 40.7        | 41.8        | 43.8        | 43.5        | 49.4        | 45.4        | 40.7        | 46.1        | 2         |
| 강원        | 28.4        | 33.3        | 33.6        | 33.7        | 33.3        | 31.9        | 38.0        | 36.2        | 34.7        | 32.4        | 17        |
| <b>충북</b> | <b>38.7</b> | <b>34.8</b> | <b>34.4</b> | <b>41.4</b> | <b>38.6</b> | <b>38.6</b> | <b>41.9</b> | <b>33.4</b> | <b>31.9</b> | <b>38.4</b> | <b>12</b> |
| 충남        | 38.8        | 34.3        | 35.3        | 40.7        | 38.4        | 35.7        | 40.3        | 39.3        | 39.5        | 37.5        | 13        |
| 전북        | 36.2        | 34.3        | 34.0        | 35.8        | 34.1        | 37.5        | 38.3        | 38.0        | 31.7        | 36.7        | 14        |
| 전남        | 45.9        | 40.2        | 42.0        | 43.4        | 38.8        | 35.3        | 39.5        | 38.8        | 36.7        | 35.9        | 15        |
| 경북        | 31.3        | 32.1        | 32.7        | 32.5        | 31.3        | 33.8        | 35.6        | 32.8        | 30.6        | 33.1        | 16        |
| 경남        | 35.4        | 34.2        | 31.2        | 35.3        | 31.1        | 34.9        | 36.7        | 35.6        | 40.8        | 42.9        | 6         |
| 제주        | 34.4        | 34.4        | 32.3        | 28.3        | 39.4        | 35.4)       | 35.4        | 33.2        | 35.1        | 40.6        | 9         |

- 또한 통계청에서 3년 주기로 작성하는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7년 및 2020년 기준 충북의 기대수명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 기대수명 : 81.9('17), 82.6('20)

1) 중앙값(median): 자료의 변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시·도별 기대수명 현황(2017, 2020)>

| 시도    | 2017년 (A) |      |      |      | 2020년 (B) |      |      |      | 증감 (B-A)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남녀차이 | 전체        | 남자   | 여자   | 남녀차이 | 전체       | 남자  | 여자  |
| 전국    | 82.7      | 79.7 | 85.7 | 6.0  | 83.5      | 80.5 | 86.5 | 6.0  | 0.8      | 0.8 | 0.8 |
| 서울    | 84.1      | 81.2 | 87.0 | 5.7  | 84.8      | 82.0 | 87.6 | 5.6  | 0.7      | 0.8 | 0.6 |
| 부산    | 81.9      | 78.9 | 84.9 | 6.0  | 82.7      | 79.6 | 85.9 | 6.3  | 0.8      | 0.7 | 1.0 |
| 대구    | 82.2      | 79.2 | 85.1 | 5.8  | 82.9      | 79.9 | 85.9 | 6.0  | 0.7      | 0.7 | 0.8 |
| 인천    | 82.4      | 79.3 | 85.6 | 6.3  | 82.9      | 79.9 | 86.0 | 6.1  | 0.5      | 0.6 | 0.4 |
| 광주    | 82.0      | 79.3 | 84.8 | 5.4  | 83.0      | 80.2 | 85.9 | 5.7  | 1.0      | 0.9 | 1.2 |
| 대전    | 82.9      | 80.5 | 85.4 | 5.0  | 83.5      | 80.7 | 86.4 | 5.7  | 0.6      | 0.2 | 0.9 |
| 울산    | 82.0      | 79.1 | 84.9 | 5.8  | 82.7      | 80.4 | 85.1 | 4.7  | 0.7      | 1.2 | 0.2 |
| 세종    | 83.0      | 80.0 | 86.1 | 6.1  | 84.4      | 82.3 | 86.6 | 4.3  | 1.4      | 2.3 | 0.5 |
| 경기    | 83.1      | 80.4 | 85.7 | 5.3  | 83.9      | 81.2 | 86.7 | 5.5  | 0.9      | 0.7 | 1.0 |
| 강원    | 82.0      | 78.4 | 85.7 | 7.2  | 82.8      | 79.6 | 86.0 | 6.5  | 0.8      | 1.1 | 0.4 |
| 충북    | 81.9      | 78.8 | 84.9 | 6.1  | 82.6      | 79.5 | 85.7 | 6.2  | 0.8      | 0.7 | 0.8 |
| 충남    | 82.2      | 78.9 | 85.6 | 6.7  | 83.2      | 80.1 | 86.3 | 6.2  | 0.9      | 1.2 | 0.7 |
| 전북    | 82.3      | 79.0 | 85.5 | 6.6  | 83.3      | 80.1 | 86.5 | 6.4  | 1.0      | 1.1 | 1.0 |
| 전남    | 82.0      | 78.4 | 85.6 | 7.2  | 82.8      | 79.1 | 86.4 | 7.2  | 0.8      | 0.8 | 0.8 |
| 경북    | 82.0      | 78.6 | 85.5 | 6.9  | 82.6      | 79.3 | 85.9 | 6.6  | 0.6      | 0.7 | 0.4 |
| 경남    | 81.9      | 78.6 | 85.2 | 6.6  | 82.8      | 79.5 | 86.0 | 6.5  | 0.9      | 1.0 | 0.8 |
| 제주    | 82.7      | 78.7 | 86.7 | 8.0  | 84.0      | 80.2 | 87.7 | 7.5  | 1.2      | 1.5 | 1.0 |
| 최고-최저 | 2.3       | 2.9  | 2.2  |      | 2.2       | 3.1  | 2.6  |      |          |     |     |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를 비롯해 강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총 5곳임. 충청북도 내에서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 자치단체     | 조례명                      | 제정일        |
|---|----------|--------------------------|------------|
| 1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 2021-03-24 |
| 2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04-30 |
| 3 | 강원도      |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2021-10-29 |
| 4 | 경기도      |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2021-11-02 |
| 5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0 |
| 6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10 |
| 7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3-04 |
| 8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2-30 |

- 이에 본 조례안은 법률의 범위에서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 문 | 규 정 사 항        | 조 문 | 규 정 사 항 |
|-----|----------------|-----|---------|
| 제1조 | 목적             | 제6조 | 기록·관리   |
| 제2조 | 정의             |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
| 제3조 |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제8조 | 사무의 위탁  |
| 제4조 |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 제9조 | 비용의 지원  |
| 제5조 |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 부칙  | 시행일     |

- **안 제3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3조제1항은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 등 지원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걷기 활성화 사업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국비, 지방비 매칭)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적 측면의 추진 사업과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계획 수립 보다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임.
  -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걷기 앱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개발한 걷기 앱을 활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자치단체 및 충북도 내 시·군에서는 기존의 민간앱(ex. 워크온, 네이버밴드 등)을 활용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 제4조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자체 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 그 밖에 걷기 사업 참여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도민의 걷기 참여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타 시·도에서도 포인트 지급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충북도 내 시·군별 걷기앱 사용 현황: 워크온(청주시 등 9개 시군), 네이버밴드(보은, 단양)

○ **안 제5조**는 걷기 사업 참여자가 지급받은 포인트의 사용방법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제1항의 포인트 사용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포인트 또는 상품권의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걷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 누적 및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걷기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안 제8조**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걷기 사업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걷기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도민건강 증진 및 기대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도민의 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함.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에 근거해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된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3.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4.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6조(기록·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의 지급,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 2. 비용 발생 요인

-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걷기 앱을 통한 목표 달성 시)
- 걷기 앱 사용료 지급
-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 3. 관련조문

- 안 제4조(지원내용)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하여 추계

| 사업명          | 지원내역   |                        |
|--------------|--|------------------------|
|              | 지원내용   | 예 산('22)               |
|              | 계  | 6,889,430천원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지역사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개선<br>*13개영역 :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금연 | 349,732천원<br>(걷기활성화사업) |

### □ 개 요

- 기 간 : 2022. 1. ~ 10.
- 대 상 : 충청도민 중 스마트폰 사용자
- 내 용
  - 커뮤니티 개인별, 그룹별, 목표 걸음 수 달성자(마일리지 적립으로 인센티브 지급)
  - 걷기 앱 활용 이벤트(챌린지) 운영 및 앱 사용료 지급
  - 걷기 정보제공 및 걷기실천 홍보·캠페인 등

